

의안번호	2221442
의 퇴 인	최기상의원
회 답 일	2026.10.7.
추 계 번호	26B4840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 (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16조 (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)	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(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) 및 자연자산의 유지·관리, 경작방식의 변경,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, 습지의 조성,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(이하 “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.(제1항) <u>7. 자연공존지역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 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5조 (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6조 (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)		

2. 상세 사유

□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(안 제15조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, 기존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현재 「국토환경 녹색복원」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가치가 높은 훼손지의 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한 2026년도 예산은 41억 4,000만원임 (참고자료 참조)

[표 1] 개발제한구역내 자연환경복원 사업비 산출 근거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총사업비 (사업기간)	기투자 (‘24년)	‘25년	‘26년	비고
합 계		420	1,680	4,140	
경기 고양 (계속)	4,200 (‘24~’26)	420	1,260	2,520	(‘26년) 완공년도 공사비 - 사업비 60%
인천 부평 (계속)	2,660 (‘25~’27)	-	420	780	(‘26년) 공사 1년차 - 사업비 30%
신규 (2개소)	4,200 (‘26~’28)	-	-	840	‘25년 선정 및 토지매수(국토부) - 설계비 420백만원×2개소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원 대상 향후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 및 단체의 규모·소요비용 및 지원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□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(안 제16조)

- 개정안에 따라 자연공존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, 계약 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「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」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이 자연자산 유지·관리,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·보전 활동을 하는 경우,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지원하고 있으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43억 8,100만원임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자연공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 서비스 증진·보전 활동의 범위 및 규모, 이에 따른 소요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관련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개요

(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)

□ 추진배경

-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(GB)중 핵심생태축(대간 또는 정맥 300m 이내)내에서 보존 가치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우리부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연계, 체계적 복원·관리하는 부처 간 협업모델 마련

※ 환경부·국토부 업무협약 체결('23.9.4.)

- 도시 내 방치된 폐철도 등 유휴부지의 안전, 도시미관 문제 해소 및 주민의 자연생태서비스 향유 공간으로 전환을 확대 추진

□ 사업필요성

-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보존가치가 높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복원으로 난개발 방지, 생물다양성 증진 및 탄소흡수원 확대 필요

※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역을 단순복구하는 소극적·수동적 개념 → 난개발우려지역, 환경·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·능동적으로 관리

□ 추진절차

- (역할분담) [국토부] 토지매수, [환경부] 자연환경복원
- (추진절차) 매수신청토지 분석(국토부)→ 현장조사 및 사업후보지 선정(환경부·국토부)→ 토지매수(국토부)→ 환경복원사업(환경부)
- (추진방식) 국가 직접사업(전문기관위탁)
- (사업내용) ❶ [산림훼손지 복원] 소류습지 조성, 망토군락(외래종 침입 억제), 휘젓길투어 조성(기후변화에 따른 토양수분 및 지하수 유지 함양 기능) 등
- ❷ [탄소흡수·생물다양성 증진] 숲 틈을 확보하여 탄소흡수원 증진수종 식재, 저층림 조성으로 식생구조 다층화, 양서파충류서식지 조성 등